

V - 13	제 목	접지공사(전력구)		
회신일자	2004년 5월 31일	회신방법	산자부 사이버민원실	
의요지				
질의) ○ 당 현장은 고압전력선 설치를 위한 전력구 현장입니다. 문의드릴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고압선 설치에 따른 접지 설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접지공사를 별도의 전기공사로 보아서 전기면허 업체에 별도로 발주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서 질의드립니다.				
신 내 용				
답변) ○ 고압전력선 설치를 위한 전력구 설비공사, 공동구내의 전기설비공사,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, 고압선 설치에 따른 접지설비 등은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시공, 설치, 유지, 보수할 수 있으므로 전기공사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, 위반시에는 전기공사업법 제42조에 의거,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				